

## 제1장

#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

#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## I. 제도의 의의

### 1. 개념

-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,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(Rolling Plan)

### 2. 제도운영의 필요성

- 중·장기적 시계에서 구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, 구 재정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
- 단년도 예산편성 제도의 미비점 보완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진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,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고 국가와 우리구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

### 3. 연혁 및 근거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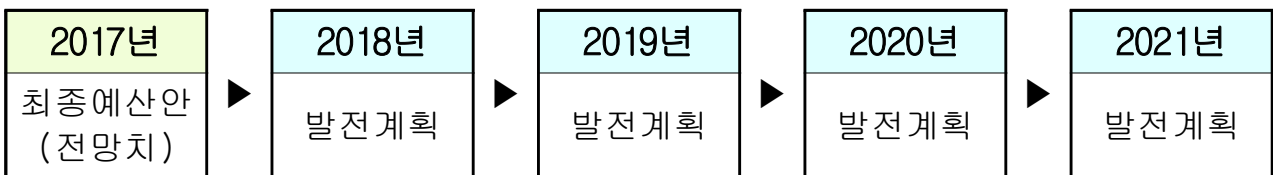
- ( '88년 ) :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법제화
- ( '93년 ) :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계획으로 운영
- ( '95년 ) :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- ( '05년 ) : 계획수립 시기 조정(4월 →11월)
- ( '07년 ) :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( '15년 ) : 계획수립 연도 변경(다음 회계연도로부터 5개년간)

## 관 련 근 거

- ◆ 지방재정법 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)
  -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
  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지문
- ◆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(예산안 첨부서류)
  -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

## II.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

□ 계획기간 : 2017 ~ 2021년 (5개년)



□ 계획대상

- 대 상 :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, 기금
- 기 준 : '17년도 최종예산안(잠정계상)을 기준으로 하되,  
'18년 이후는 성장률·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

□ 주요내용

- (재정목표)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- (재정전망)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전망
- (투자계획)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제시

## □ 계획방향

- 「2016~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( '15.11), 「행정자치부 2017~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」( '16.8), 「부산시 2017~202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」( '16.8)에 의거 계획 작성
-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,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·반영
-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·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「2016~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( '15.11) 수립 이후 여건변화 요인을 점검하고,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수립

## □ 수립 절차

①	<b>행정자치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, 자치단체 통보</li> </ul>
②	<b>지방자치단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(안) 수립</li> </ul>
③	<b>지방자치단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</li> </ul>
④	<b>지방자치단체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,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</li> <li>▪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</li> </ul>
⑤	<b>행정자치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, 관계부처 협의</li> </ul>
⑥	<b>행정자치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국무회의 보고, 중앙부처·자치단체 송부</li> </ul>

-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여, 지방의회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
-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

